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9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최연숙·윤두현·윤재갑

인재근・이수진비・권은희

이태규・金炳旭・백종헌

김미애 · 김정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사람 414,983명 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215,293명으로 약 52%에 불과하며, 같은 해 신규 면허 취득자 21,629명 중 45.4%인 9,842명이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음.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대학교육과 임상현장의 격차에 따른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전체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신규

간호사와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등의 직무를수행하도록 하며, 간호교육 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을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60조의3 및 제63조제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 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 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신 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활"을 "역량 강화와 원활"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제63조제1항 중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제4항, 제42조,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 병
	원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신규
	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
	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
	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
	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u>한다.</u>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
	<u>획·운영·평가</u>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u>및 관리</u>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
	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
	한 자원 확보・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
	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4.·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 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 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u>다.</u>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
사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u>한다.</u>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
터 설치 및 운영) ①
역량 강화와 원활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u>5</u> .・ <u>6</u>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제37조제1항 · 제2항, 제38조제1 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 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 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 병원 ·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 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 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 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그 시설 · 장비 등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 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 도록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u>제41조, 제41조의2제1</u>
<u>항 · 제4항, 제42조, 제43조</u>
,
②・③ (현행과 같음)